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 시행과 과제 및 개선방향 연구

최인백*

Choi, In-Baek

요약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설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Keywords : 휴게시설, 휴게시간, 산업재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네 번째로 높은 국가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모두 2,062명이며, 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882명에 달한다.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될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휴식은 장시간·단순·반복·정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를 감소시켜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케 해,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휴식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따라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0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휴게시설 설치 우선 적용 대상 ▲휴게시설 면적 및 위치 ▲관리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휴게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높은 반면, 휴게시설은 부족하고 설치된 휴게시설의 환경과 비품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에 불과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관한 일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단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지 의무 조항은 아니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졌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명시됐다. 조금이나마 노동자의 설 권리가 보장받게 된 점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제약조건을 뒀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은 5.9%에 불과하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휴식권마저 차별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송(배달, 운전, 화물운송 등) ▲점검·설치·수리 및 학습지 교사 등 이동 작업의 경우는 공용 휴게시설, 간이 휴게시설, 이동식 휴게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직종을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건물 경비원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상시 노동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2명 이상일 경우로 조건을 두었다. 이같이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노동자수로 제약조건을 둔 것은 모순이다. 휴게시설 설치가 필수적인 직종은 상시 노동자수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셋째,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만 6㎡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면적을 최소 6㎡만 확보하면, 법 제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휴게시설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1㎡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휴게시설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 규모 별로 기준을 두어 최소면적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3. 결론

현재 시행중인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하위법령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업장 규모와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대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대로 계속 시행된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시 최소면적만을 확보하는 면피성 대응을 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령은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우리나라의 산재사고를 낮출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고문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법제처)